

서대문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- 81 호

##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[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] 채용시험계획 공고 [안]

서대문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6월 / 일

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직무 내용
재난안전 상황실 전담요원	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2명	임용일로부터 1년 (주35시간)	재난안전과 (재난안전 상황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 접수·전파·보고</li><li>- 소방·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 상황공유</li><li>- 재난안전통신망, CCTV, 스마트 서울안전망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신속한 상황파악</li><li>- 재난문자 발송</li><li>- 당직실 재난상황 전파·출동 요청 및 상황관리</li><li>- 재난상황 근무일지 관리</li></ul>

※ 사업의 계속,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,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추가 5년 연장 가능

### 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### 3. 응시자격 요건

#### 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- 지역 · 연령 ·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### 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

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응시자격요건 (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건)
기본(필수)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년 이상 임용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· 실무경력 인정범위 : 재난 및 일반행정 분야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)</li> </ul> <p>※ 관련분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</p>
우대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무관리분야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우대</li> <li>· 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</li> </ul>

## 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### ○ 근무시간 : 주35시간

- 7개조 편성, 1일 3개조 12시간씩 교대근무
  - 주간 09:00 ~ 21:00(12시간), 저녁 18:00~익일06:00(12시간), 야간 21:00~익일09:00(12시간)
- ※ 근무시간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- 휴게시간 2시간, 상황에 따라 주간 및 저녁 전담 근무조 발생 가능

### ○ 연봉액 : 20,453천원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### ○ 수당은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06. 12.(월) ~ 06. 14.(수), <3일간 09:00~18:00, 점심시간 제외>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(대리접수 가능, 팩스 · 인터넷 접수 불가)
  - ※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(우편환) 동봉 제출
  - ※ 우편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(☎02-330-8175)에게 접수 유무 확인바라며,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  - 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접수처 :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 (본관 2층)
  - (우편번호 03718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)
 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 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 - ※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- 수입증지 판매처 : 구청 1층 민원여권과, 수입증지 가격 : 5,000원

### 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서류전형	2023.06.16(금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3.06.19(월)	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면접시험	2023.06.22(목)	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3.06.26(월)	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### 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·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
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 재공고하며, 재공고를 통한 추가 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### ○ 2차시험(면접시험) :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 · 중 · 하로 평가  
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 ·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제출서류

### ○ 응시원서(첨부1) 1부

- 응시수수료 : 5,000원 (서대문구청 1청 민원여권과)

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

### ○ 이력서(첨부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등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
### ○ 자기소개서(첨부3) 1부

### ○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) 1부

### 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첨부5) 1부

### 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6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### 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‘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7)’ 추가 제출

### ○ 자격증 사본 1통(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
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

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 담당(정연주 ☎ 02-330-8175)